

의안번호	제 42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5월 2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1
----------	-----

제출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 설 : 3건(별표 1)
 -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1건)
 -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업무(2건)
 -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사무 신설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무 신설
- 삭 제 : 1건(별표 1)
 - 기반시설 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업무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삭제

○ 그 밖의 개정사항 : 3건(별표 1)

- 위임사무명 개정 : 1건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근거 법조항 개정 : 1건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에 관한 업무 법 조항 개정

- 과 명칭 변경 : 1건

· 수질관리과 → 수자원관리과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 정 담 당 관	1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자 연 재 난 과	1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5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마. 인가내용 고시 바.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7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 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연 재 난 과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 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제7항
	11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같은 법 제38조제1항
	14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8조제4항
	15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에 따 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38조제4항
	15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6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17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연 재 난 과	18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9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20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1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2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등	같은 법 제76조
	2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 용·수용	같은 법 제78조
	2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25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6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7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28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8조
	29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0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1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2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3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34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민간협력 공동체과	1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회 계 과	1 2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복 지 정 책 과	1 2 3 4 5 6 7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 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 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51조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
보 건 정 책 과	1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 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식 의 약 안 전 과	1	<p>·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다.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마.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 바. 마약의 소매 보고 사. 행정처분 아. 청문 자.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차.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카. 몰수마약류의 폐기·처분</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53조</p>
경 제 기 업 과	1	<p>·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p> <p>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p>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 제 기 업 과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 인 물품에 관한 권한 나.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투 자 유 치 과	1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 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며, 그 밖에 KGB복합, 옥 산, 오창제2, 오창제3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청주 시에 위임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 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에 너 지 과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2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같은 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3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 수	같은 법 31조제1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4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 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나.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다.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라.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마.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정정요구 사. 보고 및 조사 등 아. 개선명령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차.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p>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p> <p>제13조, 제66조</p> <p>같은 법 제6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 제12조</p> <p>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p> <p>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p> <p>같은 법 제49조, 제50조</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52조, 제 55조, 제56조</p> <p>같은 법 제63조</p> <p>같은 법 제76조</p>
농업 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p>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p> <p>같은 법 제43조</p>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42조</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p> <p><제8848호,2008.1.17> 제2항</p> <p>같은 법 제18조제2항</p> <p>같은 법제21조제2항제2호·제3항</p> <p>같은 법 제2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지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p>농어촌정비법 제114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유 기 농 산 과	1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
	2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같은 법 제17조
	3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같은 법 제24조
	4	·다음 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 에 걸친 경우 제외)	같은 법 제26조
	5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6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축수산과	1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2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예술 산업과	1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2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4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문화과	1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2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균형 발전과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
	2	·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3	·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4	· 기반시설 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마.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사. 공동구 아. 공공공지 자. 수도공급설비 차. 전기공급설비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카. 가스공급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하. 열공급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너.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더. 문화시설 리. 연구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청소년 수련시설 어. 우수지 저. 방화설비 처. 저수지(댐 제외) 커. 방풍설비 터. 방수설비 퍼. 사방설비 허. 방조설비 고. 하수도 노. 도축장 도. 장사시설 로. 종합의료시설 모. 폐차장 보.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하천(소하천에 한함) 초.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지	같은 법 제30조, 제37조
	6	구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7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같은 법 제32조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48조, 제53조,
	8	중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제88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9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률 제22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같은 법 제9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행담보, 열람 및 고시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제88조부터 제91조 같은 법 제133조
	12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도시개발법 제4조
		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6조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같은 법 제58조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1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	같은 법 제51조	
	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14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제16조의2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6조의2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제30조제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과	1	<p>·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p> <p>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p> <p>나. 점용공사의 확인</p> <p>다. 점용료의 징수</p> <p>라. 점용료의 징수제한</p> <p>바. 변상금의 징수</p> <p>사. 원상회복</p> <p>샤. 수수료의 징수</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p>도로법 제61조, 91조</p> <p>같은 법 제62조제2항</p> <p>같은 법 제66조</p> <p>같은 법 제68조</p> <p>같은 법 제72조</p> <p>같은 법 제73조</p> <p>같은 법 제103조</p> <p>같은 법 제117조</p>
	2	<p>·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p> <p>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p> <p>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p> <p>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p>	<p>같은 법 제40조제3항제1호</p> <p>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p> <p>같은 법 제40조제4항</p>
	3	<p>·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p> <p>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p> <p>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같은 법 제106조</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p>
	4	<p>·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p> <p>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p> <p>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p> <p>다.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p> <p>라.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p> <p>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p> <p>바. 도로에 관한 조사</p> <p>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p> <p>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69조, 90조</p> <p>같은 법 제96조</p> <p>같은 법 제97조</p> <p>같은 법 제102조</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p> <p>도로법 제52조제3항</p> <p>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p> <p>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p>
	5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6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정 책 과	1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바. 등록번호표의 반납 사.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 등 아.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패조사 차.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2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4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시·군 내 사업의 한정 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5 자동차의 사용정지	같은 법 제89조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제4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파.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하. 재정지원, 조합감독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너.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더. 정관변경 등의 명령 러. 면허의 취소 머. 청문 버. 과징금 처분 7.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라.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8.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22조제1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정 책 과	10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 및 차량 초과 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11	<p>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면허·등록</p> <p>나. 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개시기간연장 승인</p> <p>다.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p> <p>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p> <p>마.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및 신고 수리</p> <p>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p> <p>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p> <p>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p> <p>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p> <p>차.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p> <p>카.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p> <p>타.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p> <p>파. 청문</p> <p>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p> <p>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p>	<p>같은 법 제4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제1항</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9조제2항</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86조</p> <p>같은 법 제88조</p> <p>같은 법 제94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 과	1	<p>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p> <p>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p> <p>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p> <p>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p> <p>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p> <p>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p> <p>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p> <p>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p> <p>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p> <p>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p> <p>카. 청문</p> <p>타. 과태료의 부과·징수</p> <p>파.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승인 및 통보</p> <p>하. 허가증의 재교부</p> <p>거.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32조제2항</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61조</p> <p>같은 법 제6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p> <p>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p>
	2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p> <p>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p> <p>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p> <p>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 금 부과·징수</p> <p>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p> <p>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p> <p>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 령 또는 폐쇄명령</p> <p>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p> <p>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제21조, 제22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25조, 제26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 제33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정책과	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 내역, 다이옥신 검사결과, 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별표 10
기대기과	1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다음 사무(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가. 대기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17조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3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4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다음 사무 가. 가정용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5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후 대 기 과	6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7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8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9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4항
	10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3
	1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의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같은 법 제68조
	1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4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1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15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나.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라.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마.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차 동차 단속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자원 관 리 과	1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가.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	
	2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7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제61조제2항, 제3항
3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42조	
4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8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 지 과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
	2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같은 법 제13조
	3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4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 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 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관계 법령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위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위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사무 관련 법령》

균형발전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20.(생략)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위임사무 관련 법령》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⑦ (생략)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⑥ (생략)

⑦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제

《위임사무 관련 법령》

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위임사무 관련 법령》

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2.(생략)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7.(생략)

④~⑥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 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위임사무 관련 법령》

때에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대기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사무 관련 법령》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